의안번호	제 384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7월 일 (제282회)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9년 7월 일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광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4

발의연월일 : 2009년 7월 일
발 의 자 : 권광택·박영웅·박종갑·이영복·
심홍섭·민경환·송은섭 (7인)

1. 제안 이유

○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며 농업의 환경보전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의 실천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경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농업인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다.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사항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라.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교류와 홍보 내용(안 제8조, 안 제10조)

마.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한 소득 감소에 대한 지원과 생산 및 유통 등에 대한 지원 규정 마련(안 제11조, 안 제12조)

바.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과 농업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3조)

사. 친환경농업육성실적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한 유공자의 시상 근거 규정 명시(안 제14조, 안 제15조)

3. 조례안 : 붙 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5. 예산조치 : 자체 세부계획수립시 재원확보

6. 관련부서 협의 : 농정국 농산지원과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이나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육성계획을 토대로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천계획 수립 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농업실천계획의 내용)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친환경농업실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의 환경오염 방지와 농업자원 보존·개선 대책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의 개발과 보급방안
3.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대방안
4. 친환경농업의 육성 지원과 실천농가 소득보전 방안
5.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소비촉진 방안
6.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친환경농업실천계획의 추진)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7조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도의 실천계획을 토대로 시·군의 실천계획을 세운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① 도지사는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와 폐영농자재 투기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농약관리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기술과 자재를 연구개발, 보급, 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와 홍보 등) ① 도지사는 민간단체와 농업인이 친환경농업기술을 서로 교류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소득이 감소한 농가에게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나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여도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실적

4.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
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절감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나 액비화 등 자원화실적

제13조(우선구매와 소비촉진)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농업 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과 농업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시장개척, 수출과 소비자 대상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친환경농업 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친환경농업육성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년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육성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생산실적
2. 농약·화학비료 감축과 친환경농자재 공급실적
3.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추진실적
4.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실천농가 소득보전 지원실적
5. 친환경농산물 유통, 소비 활성화 추진실적
6. 농업의 환경보전과 개선대책 등

제15조(시상)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시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바이오농업·농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민간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7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실천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 실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①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사용자는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을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8]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농약잔류허용기준) ①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질 또는 토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 중에 농약잔류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약의 제조 금지·변경 또는 그 제품의 수거·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 ①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